

아동보호체계의 확립방안

최근에 사회문제로 규정되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신고, 신고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가,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 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지난 7월 27일부터 개정·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시행령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정리·검토해 보고,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과 각 주의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기초로 하여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金亨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급증하는 아동 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체 사회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¹⁾.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

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구체적으

1) 한국복지재단, 『아동보호서비스와 사회복지전문기관의 역할』, 2000.

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월 12일 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지난 7월 27일부터 개정·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시행령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정리·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과 각 주의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Mandatory Child Abuse Reporting Law)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현행 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의 신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여성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일반 국민에 의한 아동학대의 자율적인 신고와 전문가들에 의한 의무적인 신고의 두 가지 통로를 통하여 아동학대가 신고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의 신고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오는 9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1)로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번호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7조는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의하여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는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나아가 “조사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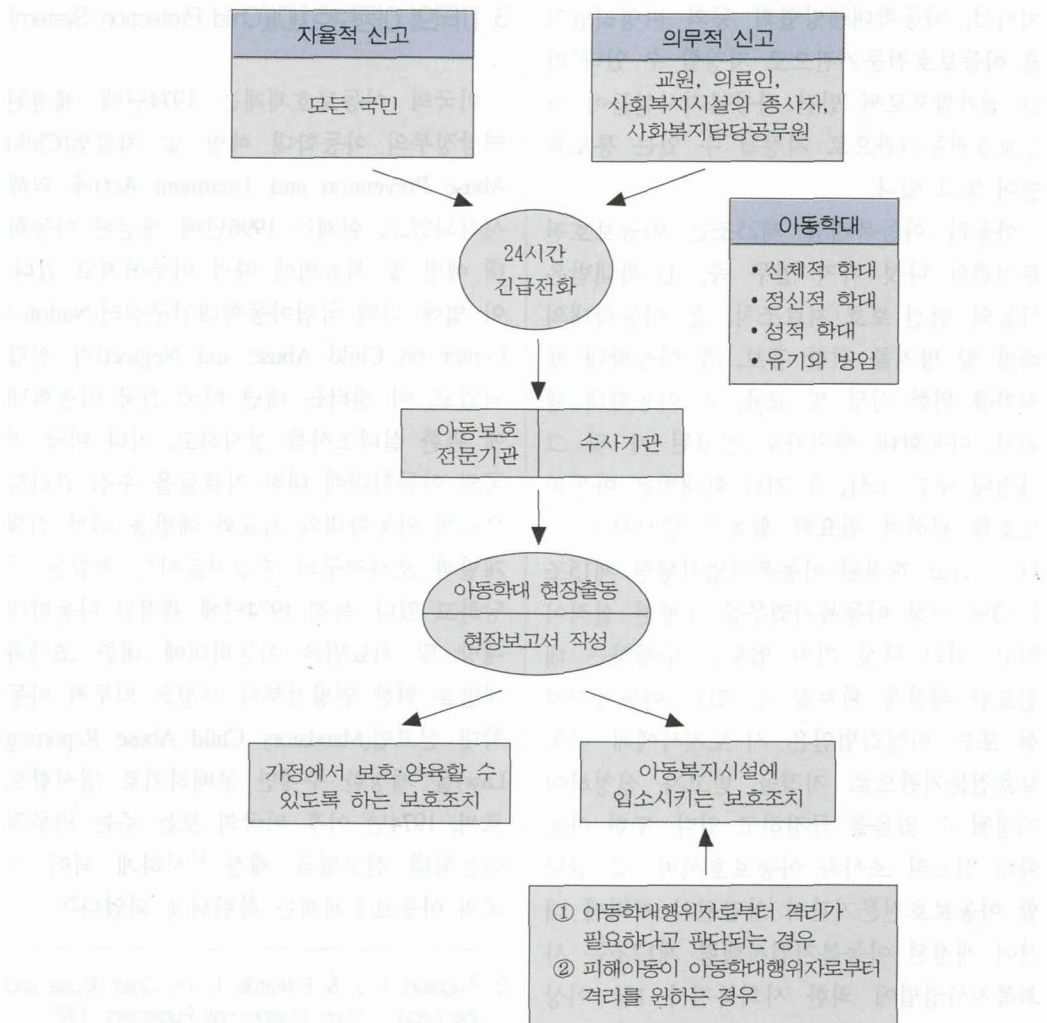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으로부터 분

리하여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상담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4조는 “국가와 지

그림 1.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성을 명백히 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첨가함으로써 민간 아동복지시설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5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다섯 가지 업무 즉, 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조치,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아동학대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는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의 다섯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여 지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 조사와 아동보호서비스를 담당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자격에 대하여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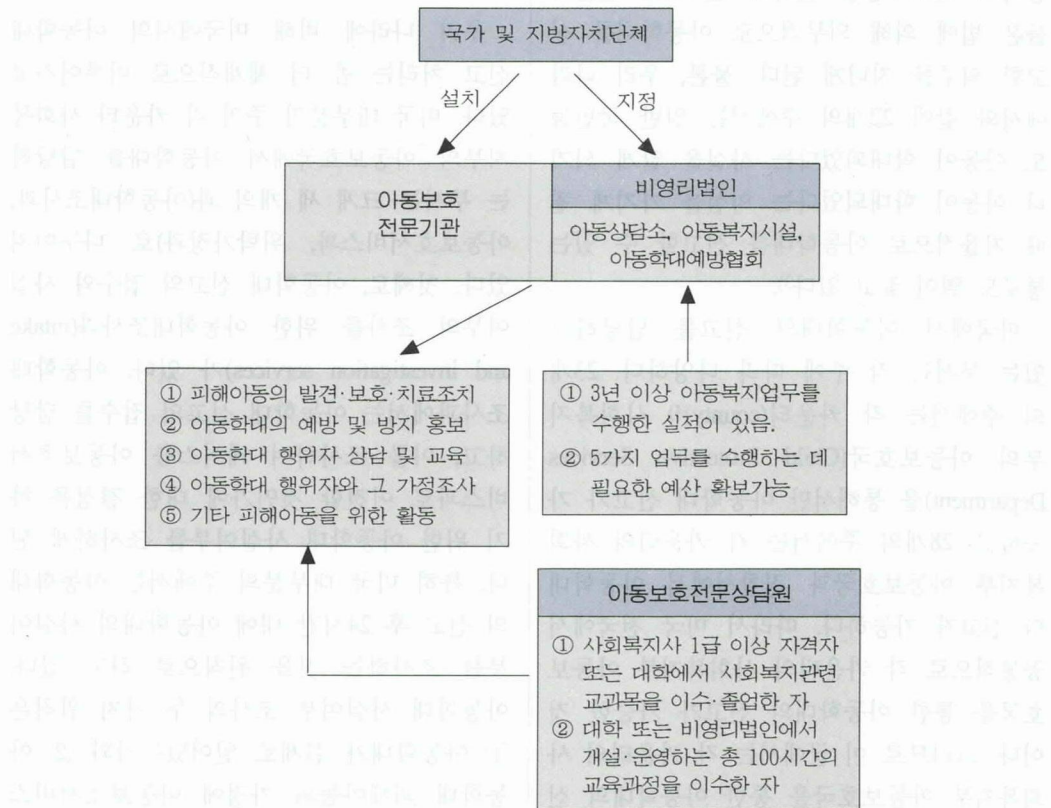
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대학에서 심리학,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총 100 시간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여 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2 참조).

3. 미국의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1974년에 제정된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재는 1996년에 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국립아동학대연구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립되었고, 이 센터는 매년 미국 전국 아동학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미국 전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관리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과 조사연구의 중심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7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을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Mandatory Child Abuse Reporting Law)을 제정한 주에만 분배하기로 명시함으로써, 1974년 이후 미국의 모든 주는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제정·실시하게 되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확립되게 되었다²⁾.

2) Sagatun, I. J. & Edwards, L. P., *Child Abuse and the Legal System*, Nelson-Hall Publishers, 1995.

그림 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상담원 체계



미국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각 주에 따라 약간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미국 각 주의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에 따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아동학대란 18세 이

하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방임(neglect)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주에 따라 정신적 학대와 방임(emotional abuse or neglect)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에 따르면, 아동과 접촉이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발견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교사, 보육사, 부모, 사회복지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법률가, 상담가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접하게 된 모든 전문가들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22개의 주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아동이 학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동이 학대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될 때 자율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 놓고 있다³⁾.

미국에서 아동학대의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각 주에 따라 다양하다. 23개의 주에서는 각 카운티(county)⁴⁾ 사회복지부의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ve Services Department)을 통해서만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고, 28개의 주에서는 각 카운티의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국과 경찰서에서 아동학대의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각 카운티의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국을 통한 아동학대의 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각 카운티의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국을 통한 아동학대의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가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⁵⁾.

2)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

우리 나라에 비해 미국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처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의 각 카운티 사회복지부의 아동보호국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부서는 크게 세 개의 과(아동학대조사과, 아동보호서비스과, 위탁가정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로,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와 사실여부의 조사를 위한 아동학대조사과(intake and investigation services)가 있다. 아동학대 조사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를 담당하고, 이를 조사하여 케이스를 아동보호서비스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아동학대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 후 24시간 내에 아동학대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실여부 조사의 두 가지 원칙은 ① 아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났는가와 ②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에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가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조사과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의 조사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아동의 안전(child's safety)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들에 대해 그 가정으로부터 총 72시간까지의 비상격리보호(emergency custody)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아동학대조사과에 접수된 케이스

3) Stein, T. J., *Child Welfare and the Law*, Longman, 1998.

4) 미국 대부분의 주의 아동보호제도는 각 카운티(county)의 사회복지부 아동복지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카운티는 미국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의 시와 도의 중간 정도 크기의 지역단위를 의미한다.

5)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Standards of Excellence for Services for Abused or Neglect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98.

가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충족하게 되면, 아동보호서비스과(child protective services)로 그 케이스가 이전되게 된다. 아동보호서비스과로 이전된 모든 케이스에는 한 가정에 한 명의 아동보호전문가(child protection worker)가 할당되어 케이스가 아동보호국에서 종료될 때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가는 우선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높은 위험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하여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서 분리하여 위탁가정(foster care home)으로 보내게 된다. 이 경우에 피해아동과 가정의 담당 아동보호전문가는 각 카운티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국의 세 번째 부서인 위탁가정과(foster care services)와 협력을 하게 되는데, 위탁가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의 선정, 피해아동의 위탁가정 배치, 위탁가정의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한 반면, 피해아동에게 높은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면, 담당 아동보호전문가는 피해아동을 그 가정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 아동보호전문가와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전문가(child protection worker)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① 피해아동을 그 가정내 현재의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② 피해아동의 가정을 도와서 향후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아

동보호전문가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로, 미국의 모든 주는 아동학대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틀(standardized protocol for risk assessment)을 개발·사용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가는 그 틀을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의 아동학대의 위험도를 측정한다. 둘째로, 피해아동 부모와의 협력 하에 케이스 계획(case plan)을 수립한다. 셋째로, 설립된 케이스 계획에 의하여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로, 지정된 기한 내에 처음에 설립한 케이스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케이스를 평가하고 종료한다. 특히 높은 아동학대의 위험 때문에 피해 아동이 그 가정에서 분리되어 위탁가정으로 보내어진 경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로부터 12~18개월 동안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피해아동 가정의 아동학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아동을 그 가정에 돌려보내고 그 케이스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가에 의해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제공된 아동보호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계획에서 지정된 기한 내에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제거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가는 법원과의 협조 하에 피해아동을 위해 그 부모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는 법적 절차(Termination of Parental Right: TPR)를 조속히 진행시키고, 그 아동을 위한 입양을 진행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가는 세워진 케이스 계획에 따라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해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를 제공한다. 각 주와 카운티에 따라 제공 가능한 아동보호서비스가 다양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보호 서비스의 종류 및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검토한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체계를 정리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4. 아동보호체계의 확립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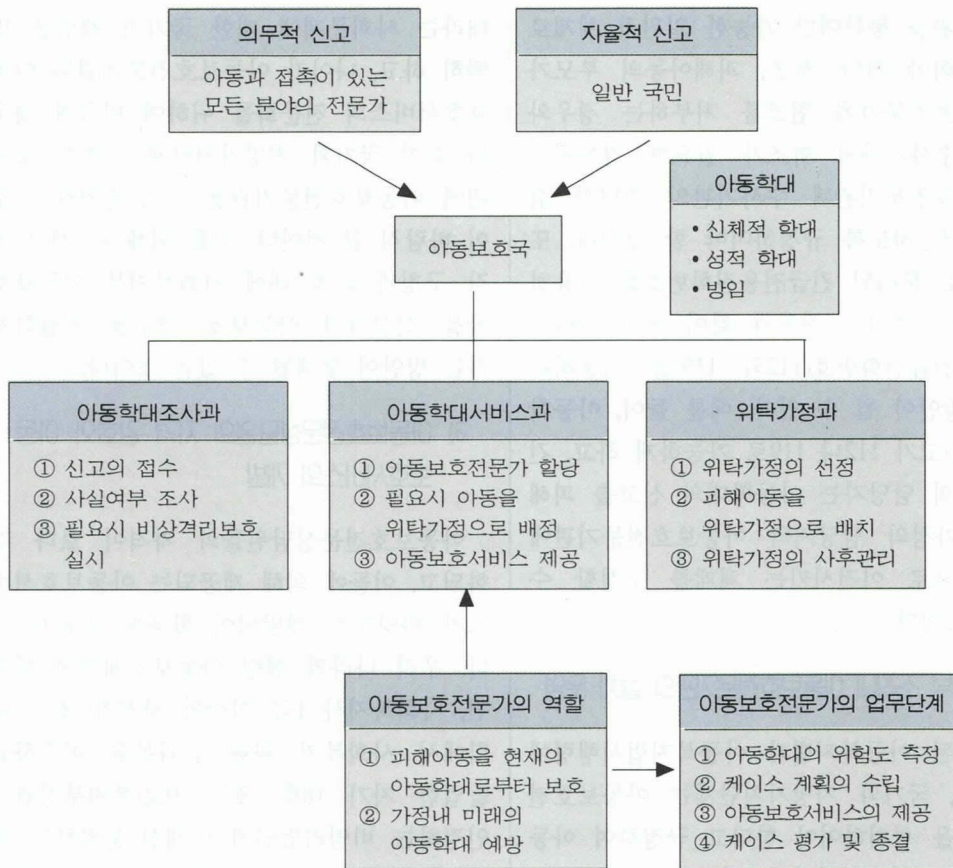
최근에 사회문제로 규정되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신고, 신고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가,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개정·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우리 나

표 1. 아동보호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	구체적 내용
긴급서비스 (emergency service)	긴급한 위험에 처한 가정을 위한 긴급 피난처 제공, 긴급 위기 상담, 긴급 재정적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counseling)	일반적 정서적 문제와 약물중독과 같은 특별한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단기특별 상담서비스 (intensive counseling)	단기적으로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평균 6주 정도의 짧은 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가정보조서비스 (homemaker service)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집안 일을 대신하여 주거나 집안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서비스
부모보조서비스 (parent-aide)	매우 짧은 기간(보통 1일) 동안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아 주거나 집안 일을 대신하여 주거나 교통편 등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간호사서비스 (visiting nurse)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에게 아동양육법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는 서비스
보육서비스 (day-care program)	양육에서 오는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일반 혹은 반일반의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부모 교육 (parent education)	가족계획, 유아를 돌보는 방법, 아동 훈육법 등에 관하여 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교통편 제공 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	의료서비스나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자조 그룹 (self-help group)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는 부모끼리 그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도와 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룹

자료: Stein, T. J., *Child Welfare and the Law*, Longman, 1998.

그림 3.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라의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의 일원화

우리 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하여 가능한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비록 아동학대의 신고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1)로 매일 24시간 운

영되는 긴급전용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신고의 이원적 체계는, 신속을 요하는 아동학대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아동학대 위험조사(risk assessment)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계획·시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모호해지는 근본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의 신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만 가능한 일원적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물론,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가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분리된 긴급전용전화번호를 사용하 기보다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 나라의 현행 긴급전화번호(112와 119)를 이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 대의 신고가 112나 119로 가능하게 하고, 긴급전화의 담당자는 아동학대의 신고를 피해 아동 가정의 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동적으로 이전시키는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조직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다섯 가지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아동복지 업무와 아동보호 업무와의 관계, 기존 직원과 아동보호전문가의 관계 등 아

동보호서비스의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 대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 보호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각 구청과 군청 내에 사회복지부 아동보호 국을 신설하여 아동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자격 강화와 아동 보호서비스의 개발

아동보호전문상담원들의 자격이 보다 강화되고,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총 100시간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아동보호전문상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아동보호 전문상담원의 중요도를 감안하고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을 공무원으로 공채하여 각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자가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국가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각

시·도의 각 구청과 군청 내에 신설된 사회복지부 아동보호국으로 배치되어 아동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상담원들에 대한 일정시간 이상의 재교육(적어도 1년에 24시간 이상)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각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아동보호서비스를 개발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아동학대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국립아동학대연구센터의 설립과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완성을 위해 가칭 『국립아동학대연구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정부출연기관인 국립아동학대연구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국립아동학대연구센터는 미국 전역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의 중심처로서 매년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있고, 나아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를 구축·관리하여 아동학대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정부차원의 아동학대연구센터가 부재함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어 아동학대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출연의 『국립아동학대연구센터』를 하루 빨리 설립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어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의 신고접수와 보호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가칭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 아동학대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